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14.] [조례 제1640호, 2019. 10.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예술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3대 이상 가정”이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신설 2019.10.14)
7.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을 말한다.(신설 2019.10.14)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모범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9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효행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과천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효행장려금은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에게 매월 말일에 50,000원을 지급한다.
- ③ 효행장려금 지급액은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14]

제11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가족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과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신설 2019.10.14]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전출로 인해 실제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 및 세대주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효행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신설 2019.10.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